



수 신 약제부서장  
(참 조)

제 목 의원발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

1.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 마약정책과-4562호(2020.7.2.), “의원발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” 관련입니다.

3. 식약처(마약정책과)에서 ‘법제업무 운영규정’ 및 ‘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, <붙임1> 참조)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,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, <붙임2>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7/13(월)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주요내용>
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[의안번호 : 01196]
  - 준수용마약류를 사용·관리할 때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(안 제56조의2)

붙임 : 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 1부.  
2. 검토서 양식 1부. 끝.

(사) 한국병원약사회



담당자 윤준호 과장

부 장

조용준

사무국장

전결 7/3  
손현아

문서번호 병약 2020-254호 (2020.7.3.금)

우 06725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2 갑목빌딩 7층

홈페이지 <http://www.kshp.or.kr>

전화번호 02-583-0887

팩스번호 02-521-5629

전자우편 [kshp21@korea.com](mailto:kshp21@korea.com) / 공개